

# 무역절차 간소화를 위한 Single Window 구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ing of Single Window System for Simplification of Trade Procedures

송선욱(Seon-Uk Song)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경제학 박사)

## 목 차

- |  |                                    |
|--|------------------------------------|
| I. 서론                                    | IV. 한국의 Single Window화를 위한 방향과 시사점 |
| II. 무역절차 간소화를 위한 Single Window화의 개념과 유용성 | V. 결론                              |
| III. 주요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Single Window 추진 내용   | 참고문헌                               |
|  | Abstract                           |

## Abstract

In many countries, a Single Window system for simplifications is establishing in order to reduce works submitted double data and compliance costs.

A Single Window is defined as a facility that allows parties involved in trade and transport to lodge standardized information and documents with a single entry point to fulfil all import, export, and transit-related regulatory requirements. A Single window can bring improved level of security, faster clearance and reduced compliance costs.

UN/CEFACT released "Recommendation and Guidelines on establishing a Single Window to enhance the efficient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rade and government". Also, WCO has made progress several projects to assist effective establishing a single window, i.e. CDM, UCR, ICT.

Korea has being established a single window system, "e-trade platform" connected with trade, clearance, logistics, marketing and payment system.

Some suggestions to establish a effective single window system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fin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a lead agency in a single window system and form a organic relationship with PGA.

Secondly, a single window system has to be progressed by stages, namely, customs clearance port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irst, and later established e-trade platform.

Las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to take part in CDM project to gain an advantage over other countries.

Key Words : Single Window, e-trade platform, CDM(Customs Data Model)

## I. 서 론

대다수 국가들은 무역과 관련된 당사자가 수입, 수출, 통과(transit)와 관련된 법규정상의 요구사항에 따라 정부기관에 다량의 정보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와 서류는 종종 상이한 몇개 기관에 있는 각기 다른 시스템 또는 서류 형태로 인해 중복 제출되고 있다. 관련된 법규준수비용을 포함한 이 같은 포괄적인 요구사항은 정부와 무역업계 모두에게 다양한 부담이 되고 있으며 국제무역의 발전을 위한 심각한 장벽이 될 수 있다.

만약 요구되는 서류등을 하나의 입력장소에 한번 제출하는 것으로 다양한 요구사항을 맞출 수 있다면 정부와 무역업계 사이의 정보전달이 간편, 신속하게 되며 이로 인해 상당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어 국제무역의 원활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Single Window 이다.

Single window는 정보요구 주체들 사이의 신속한 정보 흐름을 가능케하는 정보기술(IT)의 이용과 이들 정보의 통일화, 표준화 작업 및 법규정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국은 무역절차 간소화 및 효율화를 위한 Single Window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해 인식하고 효과적인 Single Window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무역절차 간소화를 위한 Single Window는 궁극적으로 수출국, 수입국 상호간의 정보흐름의 원활화로 이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WCO, UN 등의 국제기구에서 Single Window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전세계적으로 통일되고 표준화된 데이터 표준등을 개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절차 간소화를 위한 Single Window 추진에 대한 주요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추진내용을 확인하여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Single Window가 국제적 흐름에 맞고 가장 효과적으로 구축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이 국제 Single Window를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과 나아가 한국 표준시스템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sup>1)</sup>

## II. 무역절차 간소화를 위한 Single Window화의 개념과 유용성

### 1. Single Window화의 개념

Single Window는 사전적 의미로 하나의 창을 의미한다. 이런 표현이 정부기관이나 기업체에서 one

1) Single Window에 관한 연구는 주로 관세청, 무역협회, ktnet 등에서 실무차원의 검토 자료가 있을 뿐 학회지 등에서 별도 연구 발표된 것이 없다. 단지, "single window system을 통한 전자무역 활성화에 관한 연구"(이봉수, 무역학회지, 2003.4.) 등 전자무역과 관련된 연구가 있을 뿐이다.

stop services와 유사한 의미로 하나의 창구를 통해 모든 업무를 일괄처리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Single Window는 무역절차 간소화 측면에도 사용되어 무역절차 간소화를 위해 하나의 창구를 통해 다양한 법적 요구사항을 합치시켜 간편,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제라는 개념인 ‘무역절차 간소화를 위한 Single Window’로 표현되고 있다.<sup>2)</sup>

이러한 Single Window는 무역원활화와 법규준수도 제고 등의 목적으로 국제기구와 각국들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UN/CEFACT<sup>3)</sup>에서 정의하고 있는 Single Window 개념은 모든 수입, 수출, 통과(transit)와 관련된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완수하기 위해 단일의 입력장소(a single entry point)로 무역과 운송에 관련된 당사자가 표준화된 정보와 서류를 전달하도록 하는 도구(facility)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달되는 정보가 전자적이라면 개별데이터요소는 단지 한번만 제출되어야 한다.<sup>4)</sup>

SITPRO<sup>5)</sup>에서는 정부와 무역업계를 위해 국제무역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전자시스템으로 기업이 수출품 또는 수입물품을 통관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데이터를 한번 제출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해주는 도구로 정의하고 있다.

WCO에서는 모든 수입, 수출, 통과와 관련된 법규정상의 요구사항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의 기구(one body)와의 관계에서 표준화된 정보의 준비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 Single Window를 정의하고 있다.<sup>6)</sup>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단일의 입력장소에서 표준화된 정보가 한번 입력되는 것으로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을 완수 가능하도록 해주는 도구로 Single Window를 정의할 수 있다.

## 2. Single Window화의 유용성

Single Window는 무역업계와 정부사이에 정보흐름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하여 정보의 처리 및 이용 가능성을 향상 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시스템에서 관련 자료의 분배와 보다 효과적인 조화를 가능케 하는 등 무역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에게 의미있는 이익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Single Window의 유용성을 정부 입장과 무역업계 입장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 입장에서는 첫째, Single Window가 구축되면 신속, 정확한 요구조건 확인이 가능해진다.

2)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single window 개념을 본 연구에서는 ‘무역절차 간소화를 위한 single window’로 사용하겠다.

3) United Nations Centre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UN/CEFACT)는 UNECE(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가 무역원활화과정, 기타 상업활동과 정부활동절차와 전자적 사업표준과 관련된 분야에서 전세계적인 협의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임무로 하여 설립된 UN의 센터이다.(UN, TRADE/R.650/Rev.4, 2005.4.25, p.4.)

4) UN/CEFACT, “Recommendation and Guidelines on establishing a Single Window,” 2005.2, p.6.

5) SITPRO(The Simpler Trade Procedures Board)는 영국의 무역원활화를 위한 기구로 국제무역을 보다 쉽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6) SITPRO, “A Single Window for International Trade”.(<http://www.sitpro.org.uk/policy/singwin>)[last updated : 26 September, 2005.]

무역업자는 단일기관을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모두 제출하게 되고 이렇게 제공된 정보는 관련된 모든 정부기관에게 필요에 따라 제공되어져 요구조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무역 활동에 관련된 정부기관 상호간의 효과적인 협력과 조정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보다 효과적인 위험관리 수행이 가능하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Single Window를 통해 통제와 법집행을 위한 위험관리(R/M)기법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가능하게 한다. 그 결과 무역절차의 안전성이 제고되게 된다.

셋째, 세수확보의 가능성이 증가된다. Single Window상에 지급시스템이 포함되어 구축될 경우 정부당국과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관세나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넷째, 무역업자의 법규준수도 향상에 따른 안전성 수준 향상과 행정력의 효율적 재배치가 가능하다. 관세율과 기타 법, 절차적 요구사항에 대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Single Window는 의도하지 않은 오류를 감소시키고 무역업자의 법규준수도를 향상시켜 국가전체적으로 안전성(security)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Single Window를 통한 무역서류와 필요정보의 수집 및 상호조정은 인적자원과 금융적 비용을 절감시켜 필요한 곳에 행정력을 사전에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무역업계를 위한 주요 이점은 첫째, 신속, 정확한 무역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무역업자는 수출, 수입, 통과절차와 관련하여 모든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필요 정보와 서류를 Single Window를 통해 한번만 제출하면 되므로 신속한 통관과 반출시간을 통해 공급망(supply chain)의 속도를 신속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향상된 투명성과 증가된 예측가능성은 부패부정행위를 위한 잠재가능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셋째, Single Window가 현재의 무역법규와 규정 및 법규준수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구축될 경우 법규 적용, 투명하고 예상가능한 법규정 해석을 통해 무역거래에 따른 행정적 비용의 절감과 무역업자의 법규준수도 향상을 가져오도록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Single Window는 무역업계에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 등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sup>7)</sup>

### Ⅲ. 주요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Single Window 추진 내용

#### 1. 주요 국제기구의 Single Window 추진 내용

##### 1) WCO

##### (1) 세관 중심의 Single Window 구축

개정교토협약의 주요 원칙 가운데 하나로 Single Window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sup>8)</sup> 즉, 개정교토협약

7) UN/CEFACT, "Recommendation and Guidelines on establishing a Single Window", 2005.2, p.2.

일반부속서 표준 7.4에서는 관세당국이 자체 사용을 목적으로 정보를 보유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 그러한 정보를 전자상거래 기법에 의하여 다른 관세행정당국 및 법적으로 승인된 다른 모든 당사자와 교환하는 권한을 신설 또는 개정되는 국내법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WCO에서는 관세당국이 중심이 되어 정보를 보유하고 관련된 당사자 사이에 당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있어 Single Window의 기본인 관련 당사자 사이의 정보 교환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당해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규정된 모든 필요 자료가 하나의 규정된 신고 장소에 단지 한번 전송하도록 한 “One-Stop Shop(single window)”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즉, 세관과 다른 정부기관 간에는 무역통계정보, 쿼터수량 정보, 수출입 제한, 특혜 관세 협정 등 상당한 양의 데이터가 교환된다. 그런데 관련된 정부부서를 같은 장소에 함께 배치할 수 없으므로 정부기관 상호간의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게 되면 다른 기관이 발급하는 수출입 허가서, 검역증서 등이 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세관에 즉시 전송될 수 있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관련된 규정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무역업체가 일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정보는 전자적으로 전송 가능해야 한다. 그러므로 IT 시스템의 설계시 세관은 무역업체와의 인터페이스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과의 인터페이스도 고려하여야 한다.

세관/무역업체간 인터페이스와 세관/정부기관간 인터페이스의 개발은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표준을 이용하면 용이하게 될 수 있으며 동일한 표준을 사용하는 무역업체들은 전자정보교환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비용을 상당히 경감할 수 있다고 교토협약 가이드라인의 Single Window 관련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다.<sup>9)</sup>

## (2) Single Window 구축의 기초 마련을 위한 노력

WCO는 효과적인 Single Window 구축을 위한 몇가지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첫째, Customs Data Model(CDM)으로 국가간에 물품이동에 따른 반입화물의 안전성 제고와 화물반출 시간의 신속화를 위해 화물 도착전에 세관사이의 정보교환이 필요한데 CDM은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해 준다. 즉, 개정교토협약의 체약당사국들에게 표준화되고 조화된 필수요구정보와 절차, 필요데이터의 감축, 그리고 신고서와 기타 지원서류의 전자적 제출 등에 대한 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WCO CDM은 Single Window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세관의 요구사항 뿐만 아니라 기타 정부기관의 규정된 필수요구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WCO CDM은 무역업자가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규정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하나의 정부기관,

8) Kunio Mikuriya, “World Customs Organization The revised Kyoto Convention,” Presentation for the IMF, World Bank and IDB, WCO, 2003.2, p.11.

9) WCO, “Kyoto Convention General Annex Guidelines”, Chapter 7, 1999.6, pp.212 ~ 213.  
WCO, “Kyoto ICT Guidelines”, 2004.6, pp.52 ~ 53.

되도록이면 세관에 단지 한번만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sup>10)</sup>

국경간 무역에 있어서 화물의 통관, 운송, 도착, 출발을 위한 정식절차를 이행할 목적으로 세관과 기타 다른 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출되는 표준전자메시지와 표준화되고 조화된 데이터 세트의 최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sup>11)</sup> WCO CDM은 1996년부터 G7 Customs Initiative에서 주도하여 추진되었고 이후 2002년부터 World Customs Organization으로 이관되어 추진되었다. 2003년 12월 WCO는 WCO Customs Data Model Handbook version 1.1을 발간하였으며 G7 국가들은 2005년부터 강행사항은 아니지만 CDM의 자발적 이행에 대한 합의를 마쳤으며 향후 기타 국가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WCO는 2005년부터 매3년마다 CDM의 새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sup>12)</sup>

따라서 CDM은 국가간, 그리고 세관과 기타 다른 정부기관간의 표준화된 데이터 세트와 표준전자메시지 제공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Single Window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둘째, UCR(Unique Consignment Reference)로 이는 세관이 합법적인 국제무역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심사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통제장치를 도입하려는 두가지 측면을 동시에 충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상된 것이다.

UCR의 기본원리는 기존 운송관리번호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됨으로써 관련 무역업자에게는 추적 기능제공, 세관에는 '원산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심사추적 경로 지원과 세관의 주요 관심사항을 구성하고 있는 기초 상용 데이터에 대한 접속 조회 권한 부여의 기능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기존의 공급자/고객 관리번호(예를 들어 송품장 관리번호)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운송관리번호는 운송업자 데이터에 대한 접속 키를 제공해 주는 한편, UCR은 공급자/고객의 상용데이터에 대한 접속 키를 제공해 준다. 만약 UCR이 운송관리번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포워드와 운송업자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sup>13)</sup>

따라서 UCR은 Single Window와 관련하여 국가간 정보교환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상품이동 추적이 가능한 전자 staple 역할을 하여 국가간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해 준다.

셋째, Kyoto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Guideline으로 이는 정보와 상호의사소통 기술의 활용이 세관 통제활동의 질 뿐만 아니라 무역원활화의 수준을 향상시키게 해 준다는 인식하에 WCO가 2004년 6월에 발표한 ICT 활용을 위한 지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ICT의 영향에 따른 세관행정의 대응에 초점을 둔 것으로 고객에 대한 세관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의 향상을 위해 ICT를 사용함에 따른 세관의 잠재적 이익의 윤곽을 그려주고 있다. 또한 세관이 어떤 ICT도구를 적용하기 전에 현재 절차와 과정을 검토해야함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ICT의 이용을 통해 무역업계와 고객에게 세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결정할 때 세관의 의사결정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sup>14)</sup> 정보와 상호의사소통 기술

10) WCO, "The WCO Customs Data Model"(http://www.wcoomd.org)

11) WCO, FACT SHEET, "The WCO CUSTOMS DATA MODEL," brochure.

12) 관세청·한국무역정보통신, 「World Customs Organization Customs Data Model(CDM)」, 2004.4, p.1~2.

13) WCO, "UNIQUE CONSIGNMENT REFERENCE(UCR) Guideline," 2004.6, pp.5~6.

(ICT)의 활용을 통해 세관과 기타 다른 정부기관과의 정보교환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여 Single Window 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게 된다.

## 2) UN

### (1) UN/CEFACT의 Single Window 가이드라인의 개요

UN/CEFACT는 정부와 무역업체가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와 무역업체 사이의 정보 교환을 조화시키고 간소화할 수 있는 Single Window 구축의 가이드라인과 권고안(“Recommendation and Guidelines on establishing a Single Window to enhance the efficient exchange of information between trade and government”, Recommendation 33)을 작성하여 2005년 2월에 발표하였다.

본 권고안은 Single Window의 도입, 범위, 이익, 조성환경, 국제표준의 이용과 Single Window이행에 따른 고려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Single Window에 대한 개념, Single Window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모델, Single Window의 이점, Single Window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Single Window의 계획과 이행을 위한 실제적인 단계, Single Window 이행을 지원하는 표준과 도구들, 성공적인 Single Window 설립을 위한 요소와 부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Single Window 구축시 고려해야 할 기본전제

가이드라인에서는 각국에서 Single Window를 구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이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첫째, 수입, 수출, 통과무역과 관련된 규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맞추기 위해 무역과 운송에 관련된 당사자가 단일의 입력포인트(a single entry point)로 표준화된 정보와 서류를 전달할 수 있는지, 둘째, 무역거래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보의 교환에 있어서 프라이버시와 안전이 보장되는 법적 장치가 있는지, 셋째, 참가한 정부기관 또는 수권받은 기관이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단일의 입력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단일의 입력포인트가 다양한 정부기관의 통제를 조정하기에 적절한지, 넷째, 관세와 기타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무역관련 정부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를 추가할 수 있는지, 다섯째, 모든 관련된 정부기관과 업계의 공동노력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Single Window를 구축하도록 진행되는지, 여섯째, Single Window를 구축할 때 현재의 권고안에 첨부된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행하는지 등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sup>15)</sup>

14) WCO, “Applic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http://www.wcoomd.org)

15) UN/CEFACT, “Recommendation and Guidelines on establishing a Single Window,” Recommendation 33, 2005.2, p.3.

### (3) Single Window의 기본 모델

UN/CEFACT의 국제무역절차 작업반(ITPWG/TBG 15)은 현재 Single Window를 시행하거나 개발하고 있는 각국의 다양한 시스템을 검토한 후 세 가지 기본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째, 종이에 의하든 전자적이든 정보를 접수한 단독기관(Single Authority)이 당해 정보를 관련된 모든 정부기관에 분배하고 물류망에서 부적정한 지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를 조율하는 ‘단독기관’ 모델이다. 이 모델은 세관이 몇몇 정부기관 즉, 국세청의 수입세, 통계청의 무역통계, 무역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수입승인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스위스 Single Window가 이에 해당된다.

둘째, 국경을 통과하는 무역관련 데이터의 전자적 수집, 이용, 분배, 저장을 통합하는 ‘정보의 수집과 분배를 위한 단일자동화시스템(Single Automated System)’ 모델이다. 이 모델의 예는 미국의 경우로 무역업자가 단지 한번 표준 데이터를 제출하면 그 시스템이 거래에 관련된 기관들에게 데이터를 처리, 분배하는 체제이다.

셋째, 무역업자가 전자무역신고서를 자동화된 정보처리시스템(An automated Information Transaction System)을 통해 다양한 정부기관에 제출하고 이 기관은 단일 신청서상에서 승인하고 처리하게 되는 ‘자동화된 정보처리시스템’ 모델이다. 이 과정에서 승인은 전자적으로 정부기관에서 무역업자 컴퓨터로 전송되어진다. 이 모델의 예는 싱가포르와 모프셔서(Mauritius)가 이에 해당되며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는 수수료, 세금과 관세가 자동으로 처리되어 무역업자 은행구좌에서 차감되는 것도 가능하다.<sup>16)</sup>

### (4) Single Window 추진을 위한 성공 요인

UN/CEFACT의 국제무역절차 작업반(ITPWG/TBG 15)이 다양한 국가들에 대한 Single Window의 개발과 이행에 대하여 검토한 후 Single Window의 설립을 위한 몇 가지 성공요소를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Single Window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 이를 선도할 강력한 선도기관, 정부와 무역업계의 파트너십, 명확한 프로젝트의 범위와 목적의 확립, 사용자의 접근가능성과 친밀성, Single Window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 국제적 표준과 권고의 확립과 이용, 예상 가능한 장애요소에 대한 확인, 재정적 모델, 지급시스템의 포함 가능성, 촉진과 마케팅, 의사소통전략 등이 필요하다.<sup>17)</sup>

### (5) Single Window 구축 실행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Single Window의 계획과 이행을 위한 실제적인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Single Window를 위한 최초 개념을 정립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는 Single Window에 대한 전

16) UN/CEFACT, "Recommendation and Guidelines on establishing a Single Window," Recommendation 33, 2005.2, p.6~8.

17) UN/CEFACT, "Recommendation and Guidelines on establishing a Single Window," Recommendation 33, 2005.2, p.14~16.

체적인 목적, 잠재적 이익, 이행을 위해 포함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검토, 실제적인 문제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Single Window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최초 결정 단계로, 첫 번째 단계에서 정립된 Single Window의 개념에 대한 합의와 실행가능성에 대한 연구 착수를 위해 모든 무역유관기관, 정부기구(authorities)와 기관(agency)의 고위대표로 구성되는 정례회의를 구성한다. 이 회의에서 일단 실행가능성에 대한 연구 착수를 위한 긍정적인 결론이 이루어지게 되면 셋째, 실행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게 된다. 이 연구에는 Single Window의 잠재적 범위, 수요의 수준과 형태, 이행을 위한 가능한 시나리오, 시험테스트의 성결과 잠재, 필요한 자원, 잠재적 위험과 이익, 시간계획, 이행과 관리 전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행가능성 연구의 목적은 의사결정권자에게 사용가능한 선택에 대한 통찰력과 정부기관을 위한 의사결정권자의 결론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넷째, 실행가능성 연구보고서를 고려하는 단계로, 작성된 실행가능성 보고서는 모든 무역유관기관, 정부기관들에 의해 고려되도록 제출된다. 이 보고서가 수락되면 Single Window 설립을 위한 국가적 심포지움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선택된 대안과 연구결과물을 제시하여 중요한 부분이 분석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제시된 시험실행 또는 단계적 이행을 포함한 Single Window대안이 최종 이행결정 되기 전에 사용자 그룹의 지지를 획득하고 그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실행단계로, 시험, 단계적 또는 전면적 이행에 관계없이 Single Window가 효과적으로 구축되도록 명확한 관리계획하에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sup>18)</sup>

## 2. 주요국의 Single Window 추진 내용

### 1) 미국

#### (1) 미국의 Single Window인 ITDS/ACE

미국에서 개발, 이행하고 있는 Single Window는 ITDS(International Trade Data System)이다.

ITDS의 최초 개념은 미래 자동화된 상업환경조성팀(Future 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 Team ; FACET)인 특별T/F team의 결과였다. FACET의 목적은 정부의 국제무역처리절차를 점검하고 미래세관 자동화를 위한 건의를 하는 것이다. FACET의 주요 건의내용 가운데 수출입절차와 국제무역처리의 통합된 정부감독을 위해 통일된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sup>19)</sup> 이러한 내용이 담긴 FACET보고서에 의해 미 부통령은 ITDS 프로젝트 사무국의 설치를 미 재무성에 지시하여 1995년 9월

18) UN/CEFACT, "Recommendation and Guidelines on establishing a Single Window," Recommendation 33, 2005.2, ANNEX B, "practical steps in planning the implementation of a single window," pp.22 ~ 24.

19) UN/CEFACT, "Recommendation and Guidelines on establishing a Single Window," Recommendation 33, 2005.2, ANNEX A, "Examples of existing single windows," p.19.

에 ITDS가 설립되었다.<sup>20)</sup> 그리고 1997년 2월 정부정보기술서비스위원회(Government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Board)의 보고서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재무성하에 설립된 ITDS 시스템을 위한 특별프로젝트 사무국은 1999년 11월 17일에 관세청(the Customs Service, 현재 CBP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으로 이관되었다.<sup>21)</sup> ITDS 프로젝트 사무국은 다양한 이해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지도된다.

한편 ACE(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라고 불리는 새로운 통관자동화시스템의 개발이 ITDS 프로젝트 사무국의 작업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ACE와 ITDS는 결합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따라서 CBP는 동일하고 분리된, 궁극적으로 두개의 시스템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ITDS를 ACE/ITDS(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International Trade Data System)로 통합할 것이다.<sup>22)</sup>

ITDS의 비전은 표준무역-운송데이터의 전자적 수집 및 이용과 분배를 통해 정부와 민간부분의 요구사항을 맞추기 위한 안전하고 통합된 범정부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사무국은 다양한 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양식(forms)을 검토하여 데이터 요소의 목록을 작성했다. 그 데이터목록은 거의 3,000개의 데이터 분야로 구성된 300개 이상의 양식을 통해 자료가 중복, 복제됨을 확인해 주었다. 이 같은 3,000여개의 정보는 90%이상이 중복되므로 분석과 조화의 과정을 통해 ITDS는 200개 미만의 데이터 요소로 구성된 표준데이터세트를 만들었다. 또한 ITDS는 무역업체가 각종 관련 기관의 요구조건에 맞추기 위해 정보와 양식(forms) 등을 관련 기관에 제공하던 것을<sup>23)</sup> ITDS에 단지 한번만 표준화된 수출입과 관련된 전자적 데이터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ITDS는 제출된 표준데이터를 관련된 정부기관에 분배하게 된다.

따라서 ITDS 시스템은 무역거래에 필요한 정보가 무역업체에서 관련 기관으로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정부의 데이터 수집과 분배를 위한 Single Window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수출입거래과정에서 연방정부기관을 지원하는 것 뿐만 아니라 ITDS는 다양한 기관을 대신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게 되고 세관이 무역과 관련된 법, 규정 집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하도록 지원하게 된다.<sup>24)</sup>

ITDS의 효과적인 활용의 사례는 NAFTA하의 북미무역자동화 표준(North American Trade Automated Prototype ; NATAP)과 미국 CBP와 영국사이의 국제무역표준(International Trade Prototype ; ITP)이 있다. 이 두가지 표준은 효율성과 편리성을 위해 국제조화와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sup>25)</sup>

20) 미 부통령 Gore의 “국제무역데이터시스템 이행(Implementing the International Trade Data System)”하에서 1995년 9월에 ITDS가 설립되었다.

21) ITDS, “ITDS background”( [http : //www.itds.treas.gov/itdsivr.html](http://www.itds.treas.gov/itdsivr.html))

22) UN/CEFACT, “Recommendation and Guidelines on establishing a Single Window,” Recommendation 33, 2005.2, p.12.

23) UNCTAD에 따르면 이 같은 정보제출과 서류 준비 비용이 상품가격의 4-6%에 달한다고 추정했다.(ITDS, “ITDS background”( [http : //www.itds.treas.gov/itdsivr.html](http://www.itds.treas.gov/itdsivr.html)))

24) ITDS, “ITDS background”( [http : //www.itds.treas.gov/itdsivr.html](http://www.itds.treas.gov/itdsivr.html))

25) UN/CEFACT, “Recommendation and Guidelines on establishing a Single Window,” Recommendation 33, 2005.2, ANNEX A, “Examples of existing single windows”, pp.19 ~ 20.

## (2) Single Window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중요요소의 적용

UN/CEFACT의 Single Window 가이드라인 section 8은 Single Window의 이행, 개발, 성공적인 디자인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지적한 것으로 이들 요소를 ACE/ITDS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의지 및 선도기관과 관련하여 FACET 보고서에 따라 부통령의 지시로 ITDS Single Window가 추진되었으며 주요 무역관련기관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ITDS를 권장하며 Single Window 구축을 위한 선도기관으로 역할을 하였다.

둘째, 정부와 무역업계의 파트너십 측면에서 ITDS는 다양한 이해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지도된다. 특별히 무역업계와 정부의 대표에 의해 공동의장이 되는 ITDS소위원회가 있으며 이곳에서 ITDS와 관련된 모든 결정이 심사되고 있어 업계와의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명확한 목표와 범위의 확립측면에서 ITDS는 국제무역을 위한 통합되고 포괄적인 정부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넷째, 사용자의 접근가능성 및 친밀도와 관련하여 ITDS는 각 관련기관의 특별시스템과 대치되지 않으며 ITDS는 PGA(Participating Government Agencies; 참여정부기관)에 의한 데이터의 이용, 수집, 분배를 위한 유틸리티로서 작용한다. ACE/ITDS 데이터에 관련기관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웹기술을 이용한 웹포털로 제공되고 있다.

다섯째, 법적으로 가능한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데이터 수집, 분배, 데이터로의 접근 권한 및 관련된 법적 고려는 필수적인 것으로 ACE/ITDS와 PGA가 책임, 업무, 세부처리절차, 데이터요소 등과 관련된 세부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법적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국제표준 및 권고와 관련하여 ACE/ITDS는 WCO, UN/CEFACT, ISO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국제데이터표준과 메시지를 따르게 될 것이다. ACE/ITDS의 대표가 WCO의 CDM, UCR의 작업반에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게다가 ACE/ITDS는 WCO에 의해 개발되고 있는 ICT 가이드라인과 개정교토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 또한 PGA는 그들이 요구하는 데이터 요소가 WCO CDM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기관의 데이터가 포함되도록 WCO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일곱째, 촉진, 마케팅 및 의사소통 전략과 관련하여 ACE/ITDS는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 정부와 무역업계의 연합회의, 워크샵, 다양한 회의에서 발언하고 참가하여 single window를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여덟째, 가능한 장애물에 대한 확인과 관련하여 Single Window 구축 및 이행을 위한 자원부담문제가 장애요소가 될 수 있는데 주도적인 기관과 PGA는 single window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원한다면 금융과 인적자원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리고 single window의 개념을 개발할 때 주도기관이 국제무역절차를 지배하고 인수받으려고 한다는 잘못된 압박감을 주도기관 이외의 기관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주도기관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갖고, 그 절차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초기에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single window처럼 절차상의 급격한 변화는 저항에 직면하게 되므로 교육과 개입을 통해 이 같은 저항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표준 데이터 세트의 개발시 기관이 필요로하는 정보가 표준 데이터 세트에 포함되도록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또한 현행 시스템과 국제표준데이터의 통합시 적절한 방법을 통해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sup>26)</sup>

## 2) 일본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은 조달과 생산에서부터 판매활동에 이르기까지 통합분배관리의 새로운 비즈니스방법인 SCM(Supply Chain Management)을 발전시켰다. SCM하에 서는 거래비용의 최소화, 경과시간의 감축, 예측가능성의 확대가 핵심이다.

이 같은 업계의 활동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재무장관 Masajuro Shiokawa는 2001년 8월 28일에 세 가지 축의 정책으로 구성된 ‘국제물류혁신계획’을 제안했다. 이 계획의 구체적 수단 중 하나로 국제물류를 원활화하고 일본의 국제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NACCS(Nipple Automated Cargo Clearance System), Port EDI 시스템, 승무원하선허가시스템(Crew Landing Permit Support System), 그리고 기타 관련된 시스템을 통합하는 통합컴퓨터 인터페이스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모든 무역관련 서류가 한번의 제출로 완료 가능하도록 했다. 이것이 일본의 Single Window 시스템으로 2003년 7월 23일에 출범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재무성(관세국)은 국토교통성, 법무성, 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 등 외국무역선의 입출항과 화물의 수출입에 관련된 일련의 행정절차를 관장하는 각 부처와 협력하여 공동데이터 항목(Japan's Data Set)을 마련했다.<sup>27)</sup>

Single Window 시스템은 NACCS와 정부의 관련된 시스템이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사용자가 한번 입력하고 한번 전송함으로써 수출입에 필요한 모든 절차나 항만관련절차가 완료 가능하도록 한 수단이다.

현행 “one-stop service” 시스템은 사용자가 단일 NACCS 터미널상에서 다양한 절차를 완료할 수 있으나 데이터 전송이 각 절차를 위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Single Window” 시스템은 사용자가 단 한번의 전송으로 즉시 각기 다른 법과 규정하에서 요구하는 모든 필요절차를 이행할 수 있게 한다.

Single Window 시스템의 효과적 구축과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 기관은 사용자의 편의성 증가, 운영비용 감축, 국제표준의 고려, 절차의 간소화에 집중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첫째, 모든 필수자료의 상호교환이 가능하도록 수출입관련절차와 관련하여 재무성이 관장하는 NACCS와 항만관련절차와 관련된 국토교통성이 관장하는 Port EDI시스템이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출입절차와 항만관련

26) UN/CEFACT, “Recommendation and Guidelines on establishing a Single Window,” Recommendation 33, 2005.2, ANNEX A, “Examples of existing single windows,” pp.20 ~ 21.

27) 손병조, 「싱글윈도우로 가는 길」, 한국무역경제, 2004.4, p.125.

절차에 관련된 모든 필요절차가 두 시스템 중 하나에 한번 자료를 입력하고 전송하는 것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성과 국토교통성은 기타 관련된 부처와 기관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개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NACCS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현행 VPN(Virtual Private Network)에 추가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Single Window의 도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요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sup>28)</sup>

이 같은 Single Window의 효과적 구축방안에 따라 일본 Single Window의 기본구조는 수출입관련 절차를 관장하는 NACCS시스템과 항만 관련 절차를 관장하는 Port-EDI 시스템이 상호연결된 구조로 사용자가 이들 시스템에 기존 접속망(VPN)과 인터넷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접속가능하도록 구축되었다. NACCS에는 수출입승인 및 허가(경제산업성), 동식물검사신청(동식물검역소), 식품수입신고(검역소), 수출입신고(세관) 업무가 연결되어 있고 Port-EDI 시스템에는 입출항신고, 승무원 및 승객명부 신고(세관), 입항통보, 승무원 및 승객명부신고(입국관리국), 입출항신고(항장, 항만관리자), 입항통보 및 신고, 승무원 및 승객명부신고(검역소)업무가 연결되어 있다.

일본의 Single Window는 접속창구만 인터넷 환경으로 하고, 실제 내부 업무체계는 NACCS, Port EDI 시스템 등 대부분 기존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나 신고 자료를 1회 입력하고 송신하면 여러 기관에 대한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서류제출이 상당부분 생략되는 등 혁신적으로 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정부 부처간에 각 시스템이 상호 연계됨으로써 사전에 등록된 정보를 수시로 활용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수출입업무처리가 한번 입력으로 모두 완결되는 완전한 Single Window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일부 과거의 형태로 서류제출이나 별도의 처리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계속적으로 발전, 보완될 필요가 있다.<sup>29)</sup>

### 3) 호주

지난 수십년간 호주세관은 고객이 전자적으로 화물 신고와 관세 및 제세금 처리가 가능한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해 왔으며 또한 90년대 초반부터는 수출입통관 전반에 걸친 Single Window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세관입법, 국제사업관행의 변화와 의사소통수단 및 정보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관련 시스템도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에 의해, 호주세관은 관세행정 현대화를 위해 CMR(Cargo Management Re-engineering)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현재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새로운 IT 시스템, 입법, 사업절차의 도입이 포함된다.

특히 새로운 IT 시스템인 통합화물시스템(Integrated Cargo System : ICS)은 하나의 통합된 IT 시스템

28) 日本 財務省 關稅局, “Single Window” System for Import/Export Procedures and Port-related Procedures,“ ([http://www.customs.go.jp/tetsuzuki/sw/index\\_e.pdf](http://www.customs.go.jp/tetsuzuki/sw/index_e.pdf))

29) 손병조, 전계서, p.127.

으로 기존의 화물보고 및 처리과정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즉, 기존의 수출통관과 수출적하목록 관련 시스템인 EXIT(EXport InTegration System), 수입통관 관련 시스템인 COMPILE(Customs Online Method of Preparing from Invoices Lodgeable Entries), 항공, 해상 화물관련 시스템인 ACA(Air Cargo Automation) 과 SCA(Sea Cargo Automation)을 대체하게 되는 세관단일운영시스템이 될 것이다.<sup>30)</sup> 또한 ICS는 국경에 있어서 세관 위험관리 평가능력을 향상시키고 업계가 화물추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된다.<sup>31)</sup>

이러한 ICS는 Single Window 환경에서 수출입업자가 서류없이 정부기관과 상호교류하도록 해 주고 있다. 업계는 세련된 웹기반수단을 통해 세관 및 기타 정부기관과 상호작용하게 될 것이다. ICS는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정부기관에게는 이들 화물을 보다 효과적으로 위험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sup>32)</sup>

수출관련 시스템은 2004년 10월부터 시행하였으며 수입관련 ICS는 2005년 7월 19일부터 시작되었다.

한편, Single Window 구축을 위한 기초로 SDS(Standardised Data Set) Project가 진행되고 있다. SDS 프로젝트는 수출, 수입, 통과데이터의 정부제출을 위한 기본적 platform을 구축하기 위해 세관이 주축이 되는 전체 정부의 활동이다.

이 같은 SDS 프로젝트는 2004년에 행해진 해운안전점검(Maritime Security Review)의 일부로서 호주 세관이 제안했고 2004년 8월 내각은 세관이 중요하고 급박하게 SDS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이 제안을 승인했다. 세관은 이 프로젝트를 위해 SDS의 발전과 2005년 10월 31일까지 SDS를 기반으로하는 국내 Single Window의 사업형태에 대한 대안보고서 제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SDS 프로젝트 팀은 국제무역(승무원을 이동을 포함)과 통계자료 수집을 위해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출하고 있는 59개 정부기관주주와 30개 업체 주주로 구성되어 있다.<sup>33)</sup>

SDS는 무역과 관련된 수출입, 통과 데이터의 제출을 위해 국제적으로 승인된 WCO Model을 기초로 한 데이터 세트로, 여기에는 해상항공화물, 승무원, 운송을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SDS는 보안 기관들에게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성을 제고시키고 Single Window로 가는 기초를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표준화된 데이터 세트인 SDS에 의한 Single Window는 무역과 운송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든 수출입, 통과무역과 관련된 규정의 요구사항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의 입력포인트에 표준화된 정보와 서류를 전달하도록 하는 도구(facility)로 정의하고 있다.

이 같은 Single Window는 정보 제출을 위한 단일포인트에 한번의 전송으로 관련된 기관에 적절히 전송되어 수차례 사용가능하며 단일 포인트로 응답되고 실시간 보고가 가능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30) Australian Customs Services, "overview for accessing the ics"(http://www.customs.gov.au/site/page.cfm?u=5522)

31) Australian Customs Services, "what is cmr?"(http://www.customs.gov.au/site/page.cfm?u=4966)

32) Australian Customs Services, "New era in cargo management from October 12", minister media release, 2005.7.5.(http://www.customs.gov.au/site/page.cfm?u=4221)

33) Australian Customs Services, "standardised data set project-introduction"(http://www.customs.gov.au)

한 국가에서의 수출신고 자료가 다른 국가에서 수입신고 자료의 기초로 사용가능하도록 되는 것이다. 호주의 Single Window는 궁극적으로 수출입업자가 한번의 입력으로 모든 필요한 정부기관에 자료가 공유, 교환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고 자료의 이용도를 향상시키고 실시간으로 보고 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sup>34)</sup>

## IV. 한국의 Single Window화를 위한 방향과 시사점

### 1. 추진과정과 구축방향

#### 1) 추진과정

한국의 무역관련 Single Window는 무역자동화에서 출발하여 현재 전자무역(e-trade)추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1991년 5월 31일 사회간접자본투자조정위원회(위원장 : 부총리)가 국가 전략으로 무역자동화사업을 채택한 것이 시초가 된다. 이는 무역업무의 발전보다는 수출입물류의 신속화 추진을 위한 것으로 주로 사회간접자본 확보 등의 하드웨어적인 접근이 이루어졌다. 이들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어서 이들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해 사용자 시스템을 상역, 통관, 물류 3개 기본전산망으로 구분하고 민간관련업무까지 포함하는 물류종합전산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물류종합전산망이 각자의 책임주체가 다르고 개발이 독자적, 자율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상호연계가 되지 않아 통합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따라서 이렇게 각 주체별로 산재되어 있는 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작업이 1993년 7월 19일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전자무역위원회’ 설치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관련기관간 협력을 효율적으로 이끌어내고 추진시 다양한 장애요소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추진체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와 민간위원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sup>35)</sup>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을 범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실무적으로 무역유관기관 및 주요기업 대표로 구성된 ‘전자무역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이 위원회 산하 7개 워킹그룹<sup>36)</sup>을 통해 전자무

34) Julie Olarenshaw, “The Standardised Data Set(SDS) Project,” Australian Customs Service, p.9.

35) [http : //etrade.kita.net/etrade/committee/committee.html](http://etrade.kita.net/etrade/committee/committee.html)(국가전자무역위원회)

36) 7개 워킹그룹은 전자무역보관소, 전자무역 사용자 단일창구(single window) 구축 등을 위한 플랫폼 W/G, 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위한 마케팅 W/G, 수요자 중심의 one-stop 수출입요건확인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상역 W/G, 전자결제 시스템완비를 위한 각종 관련서류의 전자화 등을 위한 외환결제 W/G, 무역업체 중심 물류, 통관정보시스템 체계 구축 등을 위한 물류/통관 W/G, 전자무역관련 법 정비를 위한 법제도 W/G, 국제협력을 위한 글로벌 W/G로 구성되어 운영 추진하고 있다.

역 추진을 위한 문제점 및 과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있다.<sup>37)</sup>

2004년 9월 8일 제2차 국가전자무역위원회에서는 「전자무역혁신계획」 ‘e-Trade Korea 2007’을 확정하여 2008년도 시행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 중 국가전자무역의 핵심인프라로서 각 무역유관망을 연계하여 수요자에게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제공하는 ‘e-Trade 플랫폼’을 구축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추진 중에 있다.

## 2) 구축 방향

한국의 Single Window 구축방향은 현재 e-Trade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e-Trade 플랫폼은 인터넷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마케팅에서부터 결제에 이르는 무역업무 전반을 단절없이(Seamless)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무역절차별 유관망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국가 전자무역 허브로 정의할 수 있다.<sup>38)</sup>

지금까지 서비스 제공자들은 각각의 무역업체들과 단절된 관계에 놓여 있었으나 플랫폼이 구축되면 모든 프로세스들이 유기적인 관계로 변화된다. 그리고 첨단 IT 기술과 고속 인터넷을 활용해 지금까지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진행해 오던 무역절차들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24시간 윈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e-trade 플랫폼은 각종 무역관련 전자문서를 저장, 유통시키는 전자무역 문서 유통관리 시스템, 무역절차별로 다양한 서비스를 단일 창구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프레임워크, 무역유관기관 및 사용자를 연계시켜 주는 연계 인터페이스를 주요 인프라로 갖추게 된다.

이러한 e-trade 플랫폼 구축의 기대효과는 무역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한 제반 부대비용 절감, 무역에 필요한 서류와 인증절차 등의 디지털 프로세스화에 따른 무역업무량 및 시간 절감 효과가 있다. 또한 무역을 지원하는 기관의 정보를 한데 모아 무역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공급함으로써 기업의 마케팅 비용절감 등 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up>39)</sup> 보다 구체적으로 2008년도 시행시 비용절감에 따른 수출증대효과 등을 포함해 연간 총 1조 8,189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up>40)</sup>

## 2. 비교 및 시사점

### 1)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Single Window와의 비교

Single Window는 단일의 입력장소에서 표준화된 정보가 한번 입력되는 것으로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을 완수 가능하도록 해주는 도구이다. Single Window의 바람직한 구조는 기존망과의 연계 및 통합을

37) <http://etrade.kita.net/etrade/committee/committee2.html>(전자무역추진위원회)

38)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자료, “전자무역혁신계획(e-Trade KOREA 2007)의 수립”(http://www.mocie.go.kr)

39) 정윤세, “전자무역의 미래모형, ‘e-Trade 플랫폼’”, 『월간무역』, 2004.10, p.26~27.

40)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자료, “전자무역서비스 사업”(http://www.mocie.go.kr)

웹을 이용하여 이행하고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접근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결제시스템까지 추가한 시스템으로, 나아가 국가간 연계까지 확대되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Single Window의 개념과 구조측면에서 한국의 Single Window는 e-trade 플랫폼을 통해 마케팅, 상역, 물류 및 통관, 외환 및 결제 등<sup>41)</sup> 모든 무역유관기관과 나아가 해외 전자무역네트워크를 연계함으로써 무역절차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포털 개념으로 다른 국가의 Single Window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추진되고 있다.

일반적인 Single Window는 현재 관세청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는 통관단일망으로 이는 향후 e-trade 플랫폼에 연계될 것으로 단일의 입력장소(통관단일창구), 표준화된 정보(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조정 및 통합), 한번 입력을 통한 모든 관련요구사항에 합치되도록 추진되고 있다.

표준화된 정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요건확인기관과 실무조정회의를 통해 세관수입신고와 요건확인 신청 업무절차를 조정하고 10개 신청서 총542개 항목 중 440개(81%) 항목을 조정 또는 삭제함으로써 공통항목 185개와 비공통항목 102개를 포함 287개 항목으로 축소 조정하였다.<sup>42)</sup>

미국, 일본, 호주의 Single Window도 단일의 입력장소에 정보를 제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표준화된 데이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즉, WCO는 CDM, 미국은 ITDS, 일본은 Japan's data set, 호주는 SDS를 통해 데이터의 통합 및 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Single Window 추진주체와 관련하여 WCO, UN, 미국, 일본, 호주는 모두 세관이 주도 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반면 한국의 e-trade 플랫폼은 산업자원부와 관세청이 공동주관하고 있다.

한편 UN/CEFACT의 Single Window 가이드라인에서 언급하고 있는 Single Window 구축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Single Window 구축을 위한 성공요인을 한국 Single Window 구축에 대비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이드라인의 고려사항은 단일입력포인트, 정보의 공유, 보완체계 완비, 지급시스템 포함가능성, 정부와 무역업계의 파트너십 등으로, e-trade 플랫폼에 의한 단일입력포인트, e-trade 플랫폼에 연결된 마케팅, 상역, 물류 및 통관, 외환 및 결제 시스템에서의 정보 공유 및 활용, 특히 통관단일망의 경우 공인인증시스템을 도입한 모든 정보의 암호화 전송체계 구축 등 다단계의 보완체계 완비, 외환 및 결제부문의 연계에 따른 지급시스템 포함, 업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무역유관기관 및 주요기업 대표로 구성된 전자무역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한 정부와 무역업계의 파트너십 구축 등 Single Window 구축시 고려사항에 합치되고 있다.

41) 마케팅 - 바이어 정보 등 해외마케팅 관련 정보의 체계적 수집 및 무역업체와 유관기관의 마케팅 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종합검색시스템 구축  
 상역 -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세스를 단축, 개선하기 위해 각종 요건확인처리가 수요자 중심으로 One-Stop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및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 개선  
 물류 및 통관 - 전자정부과제로 구축예정인 '수출입물류단일창구'를 비롯한 다양한 물류/통관정보를 e-trade 플랫폼과 연계  
 외환 및 결제 - 국내 결제프로세스 전자화, 향후 국제적인 대금결제 즉, e-네고가 가능하도록 추진체계 및 법적 기반 마련

42)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추진현황"(www.customs.go.kr/hp/cms/pa\_000/news/paci\_000/paci\_060.html)

그리고 Single Window 구축을 위한 성공요인 중 정치적 의지측면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전자무역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e-trade Korea 2007’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력히 추진할 선도기관으로 산업자원부와 관세청이 주도하고 있다. 또한 접근가능성과 친밀도 측면에서 기존망에 접근하는 EDI 방식 등을 거대로 두고 웹을 통한 방식을 추가하여 접근가능성과 친밀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법적장치마련 측면에서 전자무역촉진법을 개정하여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국제적 표준과 권고의 확립과 이용측면에서 WCO의 CDM과 UCR 등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표준화된 데이터 작성에 참고하고 있으며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국제표준이 마련되도록 적극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Single Window는 가이드라인의 요건에 대부분 합치되게 효과적으로 구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 Single Window에 대한 주요국 비교

	시스템	선도 기관	표준화된 데이터	범 위
미국	ITDS/ACE	CBP(세관)	ITDS	수출입통관 관련
일본	NACCS와 Port EDI 시스템의 연계	재무성 관세국	Japan's data set	수출입통관 관련
호주	ICS(SDS)	세관	SDS	수출입통관 관련
한국	e-trade platform (통관단일망)	산업자원부, 관세청 공동주관	관세청과 요건확인기관 사이의 데이터 축소, 조정	무역 전반 포괄

## 2) 시사점

### (1) 주도기관의 역할 명확화 및 참여기관과의 협력 강화

주도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참여 기관들과의 보다 유기적인 협력관계 형성을 통해 효과적인 Single window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Single Window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는 e-trade 플랫폼은 산업자원부와 관세청이 공동주관하고 있어 주도기관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행하기 어려우며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도 기관 사이의 의사조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 단위기관과 청 단위 기관이 공동주관하도록 되어 있어 효과적인 의결조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e-trade 플랫폼은 기존망을 연계시키는 포탈의 개념으로 기존망과의 연결시 데이터의 송수신이나 사용자 호환 등을 위한 협력과 효과적인 조정역할 수행이 필요하며 단일통관망의 경우도 관세청은 8개 요건확인기관을 2005년 말까지 연계하고자 계획하고 있지만<sup>43)</sup> 관계부처의 이해관계 상충과 주

43) 관세청에서 일차적으로 요건확인비율이 2%이상인 식약청 등 8개 요건확인기관(요건확인비율 92%)을 선정하여 이들

도권 문제 등의 인식상이로 순조롭게 진행될지 의문이다. 그리고 서로 상이한 시스템의 조화 문제로 통일을 위해 누군가는 시스템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주도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설명하고 주도기관이 타기관을 지배하는 종속관계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시키고 타기관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등 관련기관의 협조하에서 효과적으로 Single Window가 구축되도록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도 일단 공동주관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와 관세청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확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참여기관 대다수가 참여하는 보다 확대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참여기관과의 효과적인 의견조율을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Single Window 구축을 위한 국가적 심포지움 구성을 통해 선택된 e-trade 플랫폼 구상에서 중요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 그룹의 지지와 이해를 획득해야 할 것이다.

## (2) Single Window의 단계적 시행

단계적 시행을 통한 효과적인 Single Window 구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WCO, UN 등 국제기구의 Single window 구상과 미국, 일본, 호주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관이 중심이 된 Single Window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관이 중심이 된 Single Window는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요건확인기관등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통관과 정보의 공유를 통한 안전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통관정보를 교환 및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e-Trade 플랫폼은 상역, 결제, 통관 및 물류 등의 망이 단순 연계되고 이들 망에 접근할 수 있는 포털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한번 입력에 의한 모든 요구조건 합치라는 실제적인 single Window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모든 무역관련 유관기관이 연계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부처간의 의견조율 문제나 보안문제, 표준화문제 등으로 인해 실현되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세관과 각종 통관관련 요건확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제적 single window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관세청의 통관단일창구 시스템의 발전에 보다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설정과 시스템 구축 표준 확립에 보다 효과적으로 주도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초점을 모아야 할 것이다.

## (3) 한국에게 유리한 CDM 작성을 위한 적극적 참여

표준화된 데이터 마련을 위한 국제적 표준인 CDM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에 유리하고 한국의 표준에 적합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각국은 WCO CDM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WCO CDM에 의해 채택될 공통 데이터는 국

업체와 관세청이 연계된 통관단일망을 2005년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www.customs.go.kr)

가간 수출입통관시 사용될 데이터이며 이들 데이터의 교환방식 등의 표준도 함께 논의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 적합한 데이터 요구사항이 채택되도록 하여 수출입통관관련 국내법의 요구사항 및 절차의 전반적인 수정이나 변화 없이 표준공동데이터가 마련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APEC, ASEM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차원의 협력 주도 및 UN, WCO등에서의 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다.

## V. 결 론

Single Window는 단일의 입력장소에서 표준화된 정보가 한번 입력되는 것으로 수출입과 관련된 모든 요구사항을 완수 가능하도록 해주는 도구로서 주로 세관이 중심이 되어 구축되고 있다. 또한 표준화된 정보는 향후 국가간 통관정보 교환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이를 위해 WCO에서는 표준데이터 세트와 표준전자메시지 등을 제공하기 위한 CDM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미국, 일본, 호주는 주로 세관이 주관이 되어 무역관련 유관기관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한번 입력 및 전송으로 모든 관련법규정상의 요건을 합치할 수 있도록 Single Window를 구축하고 있으며 CDM 작성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Single Window 개념은 산업자원부와 관세청이 공동주관으로 상역, 결제, 통관 및 물류 등 기존 무역절차별 유관망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신개념의 국가 전자무역 허브로서 무역절차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포털개념이다. 이는 수출입통관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할 때, 무역업무 전반을 포괄하는 보다 확대된 개념이므로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여러 가지 구축상의 장애요인으로 인해 완벽한 시스템 구축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통관단일망의 완비에 보다 노력을 기울이고 국가간 통관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CDM 작성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세계 무역업계의 핵심 관심사는 무역원활화와 안전성 확보에 있다. 이러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각국은 Single Window를 구축하고 있다. Single Window는 정보의 신속한 흐름 및 공유를 통한 효과적인 위험관리로 안전성 향상 및 신속통관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한국은 선진통관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전자무역에 관한 IT 강국으로 Single Window 구축에서도 선도적인 상황에 있으므로 Single Window의 효과적인 구축을 통해 주변 국가들을 선도하여 향후 국가간 전자무역 연계시 실질적인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관세청, “통관단일창구 추진현황”(www.customs.go.kr/hp/cms/pa000/news/paci\_000/paci\_060.html)
- 관세청·한국무역정보통신, 「World Customs Organization Customs Data Model(CDM)」, 2004.4.
- 산업자원부, “전자무역서비스 사업”(http://www.mocie.go.kr)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과 자료, “전자무역혁신계획(e-Trade KOREA 2007)의 수립”(http://www.mocie.go.kr)
- 손병조, 「싱글윈도우로 가는 길」, 한국무역경제, 2004.4.
- 정윤세, “전자무역의 미래모형, ‘e-Trade 플랫폼’”, 「월간무역」, 2004.10.
- 日本 財務省 關稅局, “Single Window” System for Import/Export Procedures and Port-related Procedures, (http://www.customs.go.jp/tetsuzuki/sw/index\_e.pdf)
- Australian Customs Services, “overview for accessing the ics”(http://www.customs.gov.au)
- Australian Customs Services, “what is cmr?”(http://www.customs.gov.au)
- Australian Customs Services, “New era in cargo management from October 12,” minister media release, 2005.7.5.(http://www.customs.gov.au/site/page.cfm?u=4221)
- Australian Customs Services, “standardised data set project-introduction” (http://www.customs.gov.au)
- ITDS, “ITDS background”(http://www.itds.treas.gov/itdsovr.html)
- Julie Olarenshaw, “The Standardised Data Set(SDS) Project,” Australian Customs Service.
- Kunio Mikuriya, “World Customs Organization The revised Kyoto Convention,” Presentation for the IMF, World Bank and IDB, WCO, 2003.2.
- SITPRO, “A Single Window for International Trade”(http://www.sitpro.org.uk/policy/singwin)[last updated : 26 September, 2005.]
- UN, TRADE/R.650/Rev.4, 2005.4.25.
- UN/CEFACT, “Recommendation and Guidelines on establishing a Single Window,” Recommendation 33, 2005.2.
- WCO, “Applic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http://www.wcoomd.org)
- \_\_\_\_\_, “The WCO Customs Data Model”(http://www.wcoomd.org)
- \_\_\_\_\_, FACT SHEET, “The WCO CUSTOMS DATA MODEL,” brochure.
- \_\_\_\_\_, “Kyoto Convention General Annex Guidelines,” 1999.6.
- \_\_\_\_\_, “Kyoto ICT Guidelines,” 2004.6.
- \_\_\_\_\_, “UNIQUE CONSIGNMENT REFERENCE(UCR) Guideline,” 2004.6.
- http://etrade.kita.net/etrade/committee/committee.html(국가전자무역위원회)
- http://etrade.kita.net/etrade/committee/committee2.html(전자무역추진위원회)